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「도로교통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 제1항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

② 「의료급여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2 중 “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「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한다.

③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“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에 따라”를 “「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한다.

④ 「출입국관리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(難民)의 인정절차 등”을 “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4호 중 “난민여행증명서”를 “「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**조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(이하 “난민여행증명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6조의 2, 제62조 제4항, 제64조 제3항, 제76조의 2부터 제76조의 10까지의 규정, 제78조 제1항 제2호, 제80조 제2항 제3호, 제95조 제10호 및 97조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⑤ 「행정절차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9호 중 “외국인의 출입국·난민인정·귀화”를 “외국인의 출입국·귀화”로 한다.